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제2장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1쪽) ※ 쪽수는 2023년 사업안내 기준임 (이하 동일함)	<p>I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 사항</p> <p>1.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나. 기본추진방향</p> <p>○ 불필요한 시설 이용 방지</p> <p>- 시·군·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이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의뢰 시에는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지양하여야 한다.</p> <p>※ (신설)</p>	<p>I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 사항</p> <p>1.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나. 기본추진방향</p> <p>○ 불필요한 시설 이용 방지</p> <p>- 시·군·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이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의뢰 시에는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지양하여야 한다.</p> <p>※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지역의 지자체 담당자는 당사자의 의사,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p>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연계 강화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2쪽)	○ (신설)	<p>○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관리</p> <p>-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명단(서식 3)을 관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입소 대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p> <p>※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한하여 동의를 받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로 관리함</p>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관리 관련 내용 추가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p>다. 이용대상</p> <p>1) 우선 입소대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p>	<p>다. 이용 대상</p> <p>1) 우선 입소대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p>	이용 대상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추가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52쪽)	<p>당하는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종류</th> <th>대상</th> <th>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접수</th> </tr> </thead> <tbody> <tr> <td>중증장애인 거주시설</td> <td>성인</td> <td>240점</td> </tr> <tr> <td></td> <td>아동</td> <td>190점</td> </tr> <tr> <td>장애유형별 거주시설</td> <td>성인</td> <td>120점</td> </tr> <tr> <td></td> <td>아동</td> <td>110점</td> </tr> </tbody> </table>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접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종류</th> <th>대상</th> <th>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 1) 접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중증장애인거주시 설</td> <td>성인</td> <td>240점</td> </tr> <tr> <td>아동</td> <td>190점</td> </tr> <tr> <td>장애유형별거주시 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td> <td>성인</td> <td>120점</td> </tr> <tr> <td></td> <td>아동</td> <td>110점</td> </tr> </tbody> </table>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 1) 접수	중증장애인거주시 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 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접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 1) 접수																														
중증장애인거주시 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 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성인	120점																														
	아동	110점																														
<p>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3쪽)</p>	<p>※ 실비입소비용 중 보장시설 1인당 월생계급여 액* 이상은 보장시설 생계급여(주·부식비, 취 사용 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하되 (후략)</p> <p>* 2023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급 기준</th> <th>30인 미만 시설</th> <th>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th> <th>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th> <th>300인 이상 시설</th> </tr> </thead> <tbody> <tr> <td>급여액</td> <td>303,266원</td> <td>272,937원</td> <td>261,324원</td> <td>261,302원</td> </tr> </tbody> </table>	지급 기준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급여액	303,266원	272,937원	261,324원	261,302원	<p>※ 실비입소 비용 중 보장시설 1인당 월생계급 여액* 이상은 보장시설 생계급여(주·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하 되 (후략)</p> <p>* 2024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보장시설의 규모</th> </tr> <tr> <th>30인 미만</th> <th>30인 이상 100인 미만</th> <th>100인 이상 300인 미만</th> <th>300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금액 (원/ 월)</td> <td>334,8 95</td> <td>304,0 16</td> <td>292,2 89</td> <td>292,2 67</td> </tr> </tbody> </table>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원/ 월)	334,8 95	304,0 16	292,2 89	292,2 67	<p>2024년 기준 중 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 장수준 변경사 유 반영</p>					
지급 기준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급여액	303,266원	272,937원	261,324원	261,302원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원/ 월)	334,8 95	304,0 16	292,2 89	292,2 67																												
<p>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4쪽)</p>	<p>라. 이용절차</p> <p>1)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 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p>*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 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시설 입소자는 개별 세대 (원)로 구성한다.</p> <p>* (신설)</p>	<p>라. 이용절차</p> <p>1)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 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p>*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 은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시설 입소자는 개별 세대 (원)로 구성한다.</p> <p>*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입소 자가 거주하는 개별 주거공간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하고, 주소 이전으로 인해공공지원이 누 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p>	<p>주소지 이전 관련 독립형 주거서 비스 제공기관 추가</p>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4쪽)	<p>2) 대상자 자격 결정</p> <p>① (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p> <p>* 시설 입소(이용) 의뢰권자인 시·군·구와 협의 필요</p> <p>※ 지자체는 타 지자체에서 입소 의뢰 시 행정처리 사항 등 입소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p> <p>- (신설)</p>	<p>2) 대상자 자격 결정</p> <p>① (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p> <p>※ 시설 입소(이용) 의뢰권자인 시·군·구와 협의 필요</p> <p>※ 지자체는 타 지자체에서 입소 의뢰 시 행정처리 사항 등 입소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p> <p><u>- 시·군·구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장애인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로 관리하고, 입소 가능 시설이 생기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희망 장애인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u></p>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 해소를 위한 내용 추가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5쪽)	<p>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p> <p>• 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적격 여부 결정 가능</p> <p>* 종합조사 결과가 거주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p> <p>• (신설)</p>	<p>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p> <p>• 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u>유효기간(3년) 이내 종합조사 결과가 거주시설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u> 동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적격 여부 결정 가능하며,</p> <p>• <u>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없거나 신청하는 장애인거주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의뢰</u></p> <p>* ①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은 적격이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부적격판정을 받았는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p>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 유효한 조사 결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주시설 재신청 기준 완화로 장애인 권익 보호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7쪽)	3) 서비스 제공 ②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453,3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3) 서비스 제공 ②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물가상승분 등 반영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7쪽)	마.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table border="1" data-bbox="338 681 724 883"> <thead> <tr> <th>대상시설</th> <th>시설별 대상 장애인</th> <th>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r> </tbody> </table>	대상시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마.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table border="1" data-bbox="743 681 1127 923"> <thead> <tr> <th>대상시설</th> <th>시설별 대상 장애인</th> <th>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td> <td>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대상 장애인과 동일</td> <td>성인 120점 아동 110점</td> </tr> </tbody> </table>	대상시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생략)	(생략)	(생략)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대상 장애인과 동일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시설 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대상시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생략)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대상시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생략)	(생략)	(생략)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대상 장애인과 동일	성인 120점 아동 110점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8쪽)	2) 정보제공 ○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시설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전원 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시설서비스 종료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 본인 및 법적대리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12)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신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참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2 > 제36조의12(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 절차의 대행자) (생략) </div>	2) 정보제공 ○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전원 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시설서비스 종료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를 장애인 본인 및 법적대리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5)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함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시설장은 당사자의 의사,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참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5 > 제36조의15(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 절차의 대행자) (기준과 동일) </div>	관련 법 조문 수정, 시설 퇴소 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시범사업 연계 강화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8쪽)	<p>바. 퇴소절차</p> <p>1) 통지</p> <p>○ 장애인의 요구·원가정복귀·시설폐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p>	<p>바. 퇴소절차</p> <p>1) 통지</p> <p>○ 장애인의 요구·원가정복귀·<u>지역사회 자립</u>·시설폐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p>	문구 수정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9쪽)	<p>○ 퇴소 시에는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여야 하며, 장애인 본인의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미성년 등)한 경우 법적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p> <p>* 다만, 이외의 사유의 경우(법적대리인 부재 등으로 보호자에 의한 동의서 제출이 어렵고, 장애인 본인의 의사능력은 있으나 의사능력이 부족하여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도 시·군·구 담당자가 자립이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7에 따라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신중한 판단하에 <u>허용할 수 있다.</u></p>	<p>○ 퇴소 시에는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여야 하며, 장애인 본인의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미성년 등)한 경우 법적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p> <p>* 다만, 이외의 사유의 경우(법적대리인 부재 등으로 보호자에 의한 동의서 제출이 어렵고, 장애인 본인의 의사능력은 있으나 의사능력이 부족하여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도 시·군·구 담당자가 자립이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7에 따라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신중한 판단하에 <u>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u></p>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강화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9쪽)	<p>4) 모니터링</p> <p>○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이용 장애인의 자립 또는 전원을 결정하기 전 자립환경 및 전원환경이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p> <p>(신설)</p>	<p>4) 모니터링</p> <p>○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이용 장애인의 자립 또는 전원을 결정하기 전 자립환경 및 전원환경이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p> <p><u>※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한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자립환경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u></p> <p><u>※ 시·군·구청장은 퇴소 후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u></p>	시설 퇴소 장애인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 연계 강화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59쪽)	○ 자립지원팀 운영 - 시설장은 입소자의 퇴소 전, 자립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퇴소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시설 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자립지원팀은 입소자의 퇴소 전, 자립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퇴소 후에도 일정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신설)	○ 자립지원팀 운영 - 시설장은 입소자의 퇴소 전, 자립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퇴소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시설 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자립지원팀은 입소자의 퇴소 전, 자립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퇴소 후에도 일정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u>- 시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15세 이상이 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을 원하는 경우 해당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u>	이동복지법 관련 내용 반영,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 자립지원 강화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60쪽)	(신설)	<u>[서식 3]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관리 대장(예시)</u> * 본문 참고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 해소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65쪽)	[서식2] 퇴소 동의서(예시) ○○시설 퇴소 동의서 (하단) ※ 법적대리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2 의거 1~3호에 해당하는 자	[서식2] 퇴소 동의서(예시) ○○시설 퇴소 동의서 (하단) ※ 법적대리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u>36조 의15</u> 의거 1~3호에 해당하는 자	법령 개정사항 반영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66쪽)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나. 기본방향 ○ 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의 경우, 가능한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조사 전문가(인권활동가 등)를 포함하여 민·관 합동조사를 추진하도록 한다.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나. 기본방향 ○ 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의 경우, <u>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u>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조사 전문가(인권활동가 등)를 포함하여 민·관 합동조사를 추진하도록 한다.	인권침해 조사에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과의 합동조사 필요성 반영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68쪽)	<p>다. 미신고 시설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기초수급비·장애수당(장애인개인연금)등 사용에 관한 불시 조사 실시 * 시설조사는 가능한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인권 관련 단체 등과 민·관합동으로 실시 	<p>다. 미신고 시설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기초수급비·장애수당(장애인개인연금)등 사용에 관한 불시 조사 실시 * 시설조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인권 관련 단체 등과 민·관합동으로 실시 	미신고 시설조사에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과의 합동조사 필요성 반영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68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용 장애인 <u>전원조치</u> * 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미 시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타 시설로 전원조치 또는 활동보조 서비스 등 다른 사회서비스 욕구가 있을 경우 귀가 등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용 장애인 <u>지원조치</u> * <u>시설 이용 장애인은 장애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타 시설로 전원조치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지역사회 자립지원 제도 연계 등 필요한 지원 조치 시행</u> 	미신고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지원조치 개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68쪽)	<u>미신고시설 중 법정시설 전환 가능 시 최대한 시일 내에 추진</u>	(삭제) 미신고시설 중 법정시설 전환 가능 시 최대한 시일 내에 추진	미신고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70쪽)	(피해자 보호·분리 조치)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성폭행, 폭행 등 사건의 경우 피해 장애인을 <u>우선 보호·분리(전원) 조치</u>	(피해자 보호·분리 조치)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성폭행, 폭행 등 사건의 경우 피해 장애인을 우선 보호·분리(쉼터 입소 등) 조치	우선 보호 분리 관련 예시 변경,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72쪽)	<p>나) 시·군·구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폐쇄 행정처분 시에 <u>입소자 전원계획, 시설 운영 지원 계획</u> 등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 - 입소자 <u>전원계획</u> 수립 시에는 개별상담을 통해 본인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 (신설) 	<p>나) 시·군·구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폐쇄 행정처분 시에 전원 및 자립지원 계획, 시설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 - 입소자 전원 및 자립지원 계획 수립 시에는 개별상담을 통해 본인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 입소자가 자립을 원할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입소자 자립지원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자립지원 관련 내용 추가
2-1 장애인	<p>다) 입소자 전원에 따른 세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p>다) 입소자 전원에 따른 세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입소자 전원에 따른 세부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거주시설 공통사항 (72쪽)	<p>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정·현원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로 우선 전원 조치 가능 	<p>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에 여유가 있는 시설로 전원 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 판단 하에 타 시설로 정원을 초과하여 전원 조치 가능(한시적인 조치이며,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때에는 초과인원에 대한 별도 지원을 하여야 하고, 기존 입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 	기존 수정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73쪽)	<p>마. 종사자 채용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사자 채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함)부터 일정기간(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p>마. 종사자 채용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사자 채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함)부터 일정기간(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함)부터 일정기간(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p>(중략)</p>	취업제한 관련 문구 정리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p>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p>	<p>-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 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함)부터 일정기간(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p>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74쪽)	<p>바. 신설 바. 장애인거주시설 통계 관리 및 행정처분 이력 관리</p>	<p>바. 무연고 입소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신상카드 제출 사. 장애인거주시설 통계 관리 및 행정처분 이력 관리</p>	무연고 입소 장애인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함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75쪽)	<p>4) 행정사항 ○ 행정처분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처리하며, 행정처분 결과는 처분 부과 주체가 차세대 사회복지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기관 관리감독]-[행정처분관리]탭에 반드시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p>	<p>4) 행정사항 ○ 행정처분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처리하며, 행정처분 결과는 처분 부과 주체가 차세대 사회복지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기관 관리감독]-[행정처분관리]탭에 반드시 처분 후 한 달 이내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p>	행정처분 결과 입력 기간 추가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76쪽)	<p>장애인복지법의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4조의6[별표 5의 5]) (신설)</p>	<p>장애인복지법의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4조의6[별표 5의 5])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 시 최신 행정처분 기준을 반영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행정처분 기준은 www.law.go.kr에서 확인</p>	
2-1 장애인 거주시설	<p>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 4]) (신설)</p>	<p>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 4])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 시 최신 행</p>	법령 개정사항 반영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공통사항 (78쪽)		<p><u>정처분 기준을 반영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행정처분 기준은 www.law.go.kr에서 확인</u></p> <p>< 개정 2023. 7. 13. > 행정처분 기준으로 수정</p>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86쪽)	<p>라. 운영 (중략)</p> <p>1)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중 1명 이상을 선정하여 이용자가 최소 연 1회 이상 인권상황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월 1회 실시하며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가 있는 달에는 <u>정기회의시 점검활동으로 대체</u> 	<p>라. 운영 (중략)</p> <p>1)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중 1명 이상을 선정하여 이용자가 최소 연 1회 이상 인권상황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월 1회 실시하며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가 있는 달에는 <u>정기회의와 인권상황점검 진행</u> 	인권상황 점검 관련 내용 명확화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19쪽)	<p>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p> <p>가. 이용자 인권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한다. - 교육 내용 : 이용자 인권 권리주장 방법, 인권침해시 대처요령, 이용자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등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6항(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p>(신설)</p>	<p>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p> <p>가. 이용자 인권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한다. - 교육 내용 : 이용자 인권 권리주장 방법, 인권침해시 대처요령, 이용자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u>이용자 성교육</u> 등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6항(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u>시설장은 이용자 인권교육 중 1시간 이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u> - 교육 내용 : <u>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 및 성 관련 자기 옹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대처 방법,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성교육에 필요한 사항</u> - 교육 방법 :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성교육프로그램 및 	이용자 성교육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p><u>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진행해야 함</u></p> <p>※ <u>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은 장애인 성교육 전문기관(강사)에 의뢰하거나 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시설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u></p>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19쪽)	<p>나. 직원 인권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인권교육은 시설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한다.(단, 하반기 채용자는 익년부터 적용) - 교육내용 : 시설이용자 인권딜레마 사례, 인권감수성, 인권의 가치, <u>도전적 행동지원 등</u> ※ (신설)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 대면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 	<p>나. 직원 인권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인권교육은 시설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한다. (단, 하반기 채용자는 익년부터 적용) - 교육내용 : 시설이용자 인권딜레마 사례, 인권감수성, 인권의 가치, 도전적 행동지원, <u>장애아동 인권 관련 내용 등</u> ※ <u>장애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직원은 인권교육 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장애아동 인권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함</u>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 대면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 (인권위 권고 사항)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20쪽)	<p>다. 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외부강사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u>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u> -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다. 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외부강사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u>지자체, 공공기관 및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u> -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인권교육 강사 자격 수정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23쪽)	<p>6.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p> <p>나. 기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생략) (신설) 	<p>.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p> <p>나. 기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기준과 같음)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u> 	장애인보호구역을 시장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없이도 직접 지정 가능함을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p><u>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함)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청이 없어도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지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u></p>	<p>명시(법령에 있는 내용)</p>
<p>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23쪽)</p>	<p>○ (신설)</p>	<p>○ <u>장애인거주시설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과 상담·신고를 지원해야 한다</u></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성희롱 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추가</p>
<p>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24쪽)</p>	<p>라.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신설)</p>	<p>라.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p> <p>○ <u>감염관리자 지정</u></p> <p>- <u>장애인 거주시설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u></p> <p>○ <u>의료연계체계 구축</u></p> <p>- <u>지자체(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함</u></p>	<p>감염관리자 지정 및 의료연계체계 구축 관련 내용 추가</p>
<p>2-1</p>	<p>○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p>	<p>○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p>	<p>관련 내용 최</p>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24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현황) 20개소('22. 12월 기준) - (신청절차) 생략 * 기타 정보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cfsm.foodnara.go.kr) 참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현황) 68개소('23. 12월 기준) - (신청절차) 기존과 동일 * 상세 정보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dietary4u.mfds.go.kr) 참조 	신화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40쪽)	<p>4) 이용자의 생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홈 거주자는 24개월(2년) 범위 내에서 체험홈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체험홈 이용자는 입소 당시 규정(이용기간)에 따름 	<p>4) 이용자의 생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홈 거주자는 24개월(2년) 범위 내에서 체험홈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체험홈 거주자가 자립을 위해 체험홈 거주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1년 단위로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존 체험홈 이용자는 입소 당시 규정(이용 기간)에 따름 	체험홈 거주자가 자립을 위해 체험홈 거주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53쪽)	<p>나. 사업추진체계</p> <p><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장 제 급 여 수 급 자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은 필요한 비용을 시·군·구에 신청(1인당 75만원)이 가능 	<p>나. 사업추진체계</p> <p><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장 제 급 여 수 급 자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은 필요한 비용을 시·군·구에 신청(1인당 80만원)이 가능 	장제급여 지급액 변경(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개정 사항 반영)
신설	11.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 지원(신설) (신설)	<p>11.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 지원</p> <p>가. 배경 및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인권증진 필요 -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하며, 장애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 지원 강화(인권위 권고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p><u>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 지원 관련 내용 규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하 “장애아동”이라 함)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u> <p><u>나. 기본방향</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장애아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u> ○ <u>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함</u> ○ <u>장애아동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u> <p><u>다. 관련 지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장애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아동이 친권자 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u> ○ <u>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아동이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u> ○ <u>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u>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p><u>원해야 할</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아동이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지자체와 시설장은 장애아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아동의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며, 후견인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시설장은 시설 내 장애아동을 위한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아동이 사회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시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15세 이상이 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을 원하는 경우 해당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p>- 자립지원계획에는 ①장애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장애아동의 상태 평가, ②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③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p>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u>내 후원 자원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장은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장애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u>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사항 (158쪽)	11.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활용 돌봄 시범사업 안내	12.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활용 돌봄 시범사업 안내 ※ 전체적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본문 참고	응급상황 대응체계 개선 등 관련 내용 개정
2-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75쪽)	라. 이용료 산정기준 ○ 이용료는 월 630,600원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	라. 이용료 산정기준 ○ 이용료는 월 <u>653,300원</u>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 반영
2-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76쪽)	6. 수행사업 (중략) ○ 자립생활 지원 - 일상생활(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여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존성을 <u>최소화</u> 시키도록 한다.	6. 수행사업 (중략) ○ 자립생활 지원 - 일상생활(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여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존성을 <u>최소화 하도록 한다.</u>	용어 변경
2-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78쪽)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2. 기본방침 ○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음 - (신설)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2. 기본방침 ○ <u>관할 지자체는</u>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음 - <u>별도의 지원기관은 관할 공동생활가정의 행정업무 지원과 대체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u>	별도의 지원기관 관련 내용 구체화
2-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79쪽)	나. 인력지원기준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인력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직종별	인력기준	비고	직종별	인력기준	비고	
	시설장	1명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은 영 현황에 따라 타 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시설장	1명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은 영 현황에 따라 타 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1명		사회재활교사	1명		
	사회재활교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상시 24시간 운영시설 또는 주 7일 운영시설에 한한다.	사회재활교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상시 24시간 운영시설 또는 주 7일 운영시설에 한한다.	
	<p>※ 단, 이전의 지침에 따라 사회재활교사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시설장은 <u>지자체 사정에 따라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의 급여를 지급한다.</u></p> <p>※ 지자체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력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 단, 이전의 지침에 따라 사회재활교사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시설장은 <u>지자체 사정에 따라 사회재활교사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시설장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 지자체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u>(시설장이 타 시설 시설장을 겸임하는 경우 등)</u> 추가적인 인력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2-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80쪽)	<p>다. 이용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인건비 등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이용료는 생계급여에 준하여 사용하고, 집행잔액 발생시 사업비 및 운영비로만 사용 가능 			<p>다. 이용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인건비 등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이용료는 생계급여에 준하여 사용하고, 집행잔액 발생시 사업비 및 운영비로만 사용 가능(「<u>근로기준법</u>」 <u>준수 및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로도 사용 가능</u>) 			공동생활가정 운영 관련 탄력성 제고
2-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82쪽)	<p>5. 입주대상자 선정</p> <p>가. 입주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p>5. 입주자 선정</p> <p>가. 입주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시간 동안 근로 및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기타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입주기준 변경 (이용자의 낮 시간 선택권 확대)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3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182쪽)	나. 이용자의 생활 ○ 이용자는 낮 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교육 기관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용자의 생활 ○ 이용자는 낮 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u>직장 및 교육 기관, 기타 지역사회 활동 기관 등을 이용하는</u>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용자 낮시간 활동 다양화
신설	IV.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신설)	<u>IV.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u> * 본문 참고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에 따른 운영지침 마련
2-5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84쪽)	IV.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3. 기본 원칙 ○ (신설)	<u>V.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u> 3. 기본 원칙 ○ <u>동 기준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준이며, 지자체는 소관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필요</u>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함
2-5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87쪽)	5. 기타 행정 사항 라. 52시간 교대인력 채용 ○ <u>안전사고 예방 및 입소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야간 근무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교대 인력 산정은 주간 2교대 인력 기준 1교대 팀 인원의 60%를 야간 인력에 충원한 것으로 야간 취침 없이 8시간 근무</u> - <u>인건비 지원기준에 추가하여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교대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지자체는 「근로기준법」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필요</u>	5. 기타 행정 사항 라. 52시간 교대인력 채용 ○ <u>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입소자 편의 증진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위해 인건비 지원기준에 추가하여 52시간 교대인력(주간 2교대 인력 기준 1교대 팀 인원의 60%를 야간 인력에 충원) 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교대인력 및 야간 근무조 편성 시에 입소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u> * <u>지자체는 입소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야간 근무조가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영되는지 점검해야 함</u> - 지자체는 「근로기준법」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필요	52시간 교대인력 관련 내용 개선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5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87쪽)	<p>마.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이용 장애인을 자립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범사업 종료 시(~'24.)까지 자립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종사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음 	<p>마. <u>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u> 시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u>'에 참여하여 이용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경우('23. 이후 이용 장애인을 자립지원한 경우부터 해당)에는 해당 시범사업 종료 시(~'24.)까지 자립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종사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음 	시범사업명 변경 반영																																																				
2-5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88쪽)	<p>바. 휴일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5인 이상 시설의 생활지도원, 조리원은 '21년부터 휴일수당 적용 - '23년 공휴일 : 16일 <table border="1"> <tr> <td>1.1</td> <td>신정</td> <td>8.15</td> <td>광복절</td> </tr> <tr> <td>1.21~2.4.</td> <td>설날(3) 대체공휴일(1)</td> <td>9.28~9.30</td> <td>추석(3)</td> </tr> <tr> <td>3.1</td> <td>삼일절</td> <td>10.3</td> <td>개천절</td> </tr> <tr> <td>5.5</td> <td>어린이날</td> <td>10.9</td> <td>한글날</td> </tr> <tr> <td>5.27</td> <td>석가탄신일</td> <td>12.25</td> <td>성탄절</td> </tr> <tr> <td>6.6</td> <td>현충일</td> <td>계</td> <td>16일</td> </tr> </table> <p>- (법률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p> <p>- 평일 근무 인원의 2/3 인원만 휴일수당 지원 (휴일 근무조 편성 시 참고)</p> <p>- (신설)</p>	1.1	신정	8.15	광복절	1.21~2.4.	설날(3) 대체공휴일(1)	9.28~9.30	추석(3)	3.1	삼일절	10.3	개천절	5.5	어린이날	10.9	한글날	5.27	석가탄신일	12.25	성탄절	6.6	현충일	계	16일	<p>바. 휴일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종사자5인 이상 시설의 생활지도원, 조리원</u> - '24년 공휴일 : 18일 <table border="1"> <tr> <td>1.1</td> <td>신정</td> <td>6.6</td> <td>현충일</td> </tr> <tr> <td>2.9~2.12.</td> <td>설날(3) 대체공휴일(1)</td> <td>8.15</td> <td>광복절</td> </tr> <tr> <td>3.1</td> <td>삼일절</td> <td>9.16~9.18</td> <td>추석(3)</td> </tr> <tr> <td>4.10</td> <td>제22대 국회의원 선거</td> <td>10.3</td> <td>개천절</td> </tr> <tr> <td>5.5~5.6</td> <td>어린이날(1) 대체공휴일(1)</td> <td>10.9</td> <td>한글날</td> </tr> <tr> <td>5.15</td> <td>석가탄신일</td> <td>12.25</td> <td>성탄절</td> </tr> <tr> <td colspan="2">계</td> <td colspan="2">18일</td> </tr> </table> <p>- (법률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p> <p>- 평일 근무 인원의 2/3 인원만 휴일수당 지원 (<u>휴일수당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이며 이를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방비 전액 또는 자부담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에 근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같음하여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 부여 가능</u>)</p> <p>- <u>휴일수당 관련 국고 보조예산 부족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에서는 지방비 전액 또는 자부담으로 추가 지원하는 등 부족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u></p>	1.1	신정	6.6	현충일	2.9~2.12.	설날(3) 대체공휴일(1)	8.15	광복절	3.1	삼일절	9.16~9.18	추석(3)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3	개천절	5.5~5.6	어린이날(1) 대체공휴일(1)	10.9	한글날	5.15	석가탄신일	12.25	성탄절	계		18일		'24년 휴일 반영 및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함
1.1	신정	8.15	광복절																																																				
1.21~2.4.	설날(3) 대체공휴일(1)	9.28~9.30	추석(3)																																																				
3.1	삼일절	10.3	개천절																																																				
5.5	어린이날	10.9	한글날																																																				
5.27	석가탄신일	12.25	성탄절																																																				
6.6	현충일	계	16일																																																				
1.1	신정	6.6	현충일																																																				
2.9~2.12.	설날(3) 대체공휴일(1)	8.15	광복절																																																				
3.1	삼일절	9.16~9.18	추석(3)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3	개천절																																																				
5.5~5.6	어린이날(1) 대체공휴일(1)	10.9	한글날																																																				
5.15	석가탄신일	12.25	성탄절																																																				
계		18일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5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90)쪽	<p>1. 보조금의 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는~제출하여야하며, 특히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이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p>1. 보조금의 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는~제출하여야하며, 특히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이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법 개정사항 반영
2-5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91)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u>단 기간(연간 10일 이내)일</u>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u>병가일수가 연간 연속으로 7일을 초과하는 경우</u>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지방자치단체 지침, 시설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에 따라 이 기준 이상의 별도 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은 지방비 또는 시설 자체예산으로 부담함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연간 30일 범위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지방자치단체 지침, 시설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에 따라 이 기준 이상의 별도 기준 적용 시 추가비용은 지방비 또는 시설 자체예산으로 부담함 ※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병가로 인한 입소 장애인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함 	유급병가 일수 확대 및 대체인력 지원 노력 의무 규정
2-5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92)쪽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지침 또는 시설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별휴가를 지급할 수 있으나, 특별휴가 지급으로 인하여 입소 장애인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휴가 지급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지방비 또는 시설 자체예산으로 부담해야 함 	지자체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급하는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함
2-5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유 면허 및 자격에 따라 시설 안내, 조직도 등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함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유 면허 및 자격에 따라 시설 안내, 조직도 등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함 - 간호사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 	의료법 관련 내용 반영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192쪽)		<u>료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신고증을 사전에 확인하고 채용하여야 하며,</u> - 간호조무사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자격신고증을 사전에 확인하고 채용해야 함									
2-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94쪽)	[별표 1] 2023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별표 1] <u>2024년</u>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 본문 참고	인건비 지원 기준 변경사항 반영								
2-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95쪽)	[별표 2] 2023년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별표 2] <u>2024년</u>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 본문 참고	관리운영비 인상								
2-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96쪽)	[별표 3] 2023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 <table border="1" data-bbox="338 1090 724 1286"> <thead> <tr> <th>직종명</th> <th>지원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조리원</td> <td>시설당 2명 * 이용장애인 현원이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td> </tr> </tbody> </table>	직종명	지원기준	조리원	시설당 2명 * 이용장애인 현원이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별표 3] <u>2024년</u>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 <table border="1" data-bbox="743 1090 1129 1358"> <thead> <tr> <th>직종명</th> <th>지원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조리원</td> <td>시설당 2명 * <u>이용장애인 현원이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 1명 추가하며, 이후에는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예시 : 50명 미만 2명, 50~100명 3명, 101~150명 4명)</u></td> </tr> </tbody> </table>	직종명	지원기준	조리원	시설당 2명 * <u>이용장애인 현원이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 1명 추가하며, 이후에는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예시 : 50명 미만 2명, 50~100명 3명, 101~150명 4명)</u>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직종명	지원기준										
조리원	시설당 2명 * 이용장애인 현원이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직종명	지원기준										
조리원	시설당 2명 * <u>이용장애인 현원이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 1명 추가하며, 이후에는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예시 : 50명 미만 2명, 50~100명 3명, 101~150명 4명)</u>										
2-6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99쪽)	2. 사업의 종류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구분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시설을 새로이 건축하는 것	2. 사업의 종류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구분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시설을 새로이 건축하는 것 * <u>(예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이 부지를 이전하여 신규 설치,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일반주택, 공동주택 등 매입, 기존</u>	사업 종류에 대한 정의 추가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축 : 기존 시설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개보수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시설 건물의 내·외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장비보강 : 재활훈련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u>장애인 거주시설 대지 내 있는 모든 건축물 멸실(건축물대장/등기) 후 새로이 행해지는 건축공사 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축 : 기존 시설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예시) <u>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 대지 내 추가로 별동 등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증축</u>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개보수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시설 건물의 내·외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장비보강 : <u>시설안전 및 환경 개선, 이용 장애인의 재활훈련·편의증진 등에 필요한 장비</u> 구입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2-6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0쪽)</p>	<p>4.주요 업무처리 절차</p> <p>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 교부신청 세부 일정 - '23년도 확정사업 교부신청 : 3월말 까지 - 사업 모니터링 : 분기별 점검(사업 모니터링 후 상반기 내 미시행 및 연내 집행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취소 예정) - 사업계획 변경 마감 : 5월 31일 - 교부신청 마감 : 5월 31일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4.주요 업무처리 절차</p> <p>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 교부신청 세부 일정 - '24년도 확정 사업 교부신청 : 3월말 까지 * <u>인허가 및 입찰로 인한 교부신청 지연 및 사업변경(감액)이 필요한 사업은 사유서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전 통보</u> * <u>마감일 이후 교부 미신청 사업은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u> - <u>국가보조금의 변경이(감액)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 마감 : 5월 31일</u> - <u>국가보조금의 변경(감액) 사업 교부신청 마감 : 5월 31일</u> <p>○ 사업 모니터링(관할 지자체)</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인한 이월 사업 발생 예방</p>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이상 점검: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 분기별 점검: 사업 모니터링 후 분기 말일까지 점검 결과 통보 * 상반기 내 미시행 및 연내 집행 원료가 어려운 사업은 취소 될 수 있음 	국 고 보 조 금통합관리 규정 개정 사항 반영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1쪽)	나. 202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2022년도 사업비 정산 -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제반수수료는 자부담 - (신설)	나. <u>2024년도</u> 국고보조금 집행 및 <u>2023년도</u> 사업비 정산 -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제반수수료는 자부담 - 장비(차량 등의) 취득등록세, 보험료, 탁송료 등의 제반수수료는 자부담	◦차량 지원 자부담 명확화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1쪽)	다. 2024년도 사업신청(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 신축시설 사업비 신청 및 수요 산정 - 지자체별로 시설 서비스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확충)시설 수 산정 - 가정형 소규모시설 확충 등 거주시설 기능개편 위주 지원(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다. <u>2025년도</u> 사업신청(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 신축시설 사업비 신청 및 수요 산정 - 지자체별로 시설 서비스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확충)시설 수 산정 - <u>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할 수 있는 시설 및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등 거주시설 기능개편 위주 지원</u>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 반영 하여 수정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2쪽)	◦ (신설)	◦ <u>시·도 별 기능보강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사업 신청</u> - <u>시·도 전체 수요를 조사하여 전체적인 기능보강계획(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 신청</u> - <u>사업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서는 지원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정부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여부,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사업 신청</u>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신청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함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2쪽)	5. 추진 방침 ○ 비용부담 -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은 50:50 <u>으로 한다.</u>	5. 추진 방침 ○ 비용부담 -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은 50:50을 <u>원칙으로 한다.</u> ※ 필요한 경우 지자체 판단하에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지방비 추가 지원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3쪽)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일반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매입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나, (후략)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u>공동생활가정 및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u> 일반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매입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나, (후략)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내용 반영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3쪽)	○ 관할 지자체는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추진을 위하여 기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정원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것	○ 관할 지자체는 <u>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 해소와 기존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 및 시설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u>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것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 해소 필요성 반영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3쪽)	○ (신설)	○ <u>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u>	장애아동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필요성 반영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4쪽)	○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3년)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지원 단위</th> <th colspan="2">지원액</th> </tr> <tr> <th>연면적(a)</th> <th>지원단가(b)</th> </tr> </thead> <tbody> <tr> <td>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장애유형별거주시설</td> <td>1개소 /30인</td> <td>900㎡</td> <td>1,397천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단위	지원액		연면적(a)	지원단가(b)	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장애유형별거주시설	1개소 /30인	900㎡	1,397천원	○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4년)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지원 단위</th> <th colspan="2">지원액</th> </tr> <tr> <th>연면적(a)</th> <th>지원단가(b)</th> </tr> </thead> <tbody> <tr> <td>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장애유형별거주시설·<u>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u></td> <td>1개소 /30인</td> <td>900㎡</td> <td>1,397천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단위	지원액		연면적(a)	지원단가(b)	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장애유형별거주시설· <u>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u>	1개소 /30인	900㎡	1,397천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내용 반영
구분	지원 단위			지원액																			
		연면적(a)	지원단가(b)																				
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장애유형별거주시설	1개소 /30인	900㎡	1,397천원																				
구분	지원 단위	지원액																					
		연면적(a)	지원단가(b)																				
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장애유형별거주시설· <u>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u>	1개소 /30인	900㎡	1,397천원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5쪽)	-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 지원 가능	- 시설의 <u>소규모화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 기관</u> ,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 지원 가능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내용 반영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5쪽)	<p>○ 증개축 사업</p> <p>- 시설별·사업법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을 결정하되, 정원 30인 초과 시설은 증축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정원 30인 초과 시설이 증개축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의 구체적인 소규모화*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해당 시·도는 전년도 이행상황을 기능보강 신청시 첨부해야 함</p> <p>* 시설 소규모화는 정원 30인 이내의 축소를 말함(현원 감축 + 정원 조정)</p>	<p>○ 증개축 사업</p> <p>- 시설별·사업법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을 결정하되, 정원 30인 초과 시설은 증축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정원 30인 초과 시설이 증개축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의 구체적인 소규모화*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해당 시·도는 전년도 이행상황을 기능보강 신청시 첨부해야 함</p> <p>* 시설 소규모화는 정원의 20% 이상(정원을 20% 이상 감축하였을 때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는 30인 이내)의 축소를 말함(현원 감축 + 정원 조정)</p>	시설 소규모화 기준 변경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6쪽)	<p>7. 페널티 및 지원 배제 대상</p> <p>가. 페널티</p> <p>1) 지원대상 제외</p> <p>○ 기능보강 사업이 확정된 후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기한 다음해를 포함하여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p> <p>* (예시1) '23년 사업선정 전 '22년 사업포기 → '23~'26년 제외</p> <p>* (예시2) '23년 사업선정 후 '22년 사업포기 → '23년 사업선정 취소(후순위사업 선정), '23~'26년 제외</p> <p>○ 기능보강 사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이 될 경우 이월된 사업 다음해를 포함하여 3년</p>	<p>7.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 배제 항목</p> <p>가. 지원 대상 선정기준</p> <p>1) 지원대상 선정 시 지원순위 하향 대상</p> <p>1. 기능보강 사업이 확정된 후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기한 다음 해부터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지원순위 하향</p> <p>* (예시1) '24년 사업선정 전 '23년 사업포기 → '24~'27년 지원순위 하향</p> <p>* (예시2) '24년 사업선정 후 '23년 사업포기 → '24년 사업선정 취소(후순위사업 선정), '24~'27년 지원순위 하향</p> <p>2. 기능보강 사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이 될 경우 이월된 사업 다음 해부터 3년(일부:2-a) 또는</p>	용어 변경 및 지원순위 하향대상 관련 문구 정비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p>(일부) 또는 4년(전액)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p> <p>* (예시1) '21년 사업을 '22년 일부 이월, '22년 종료 → '23~'25년 제외</p> <p>* (예시2) '21년 사업이 '22년 전액 이월, '23년 종료 → '23~'26년 제외</p> <p>○ 기능보강사업 사업 종료 후 천재지변, 화재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품목별 내용연수 도래 전 매각한 경우 매각한 다음 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 사업으로 선정)</p> <p>* (예시) '22년 매각 → '23~'25년 제외</p> <p>○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승인절차 등을 미준수 할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p>	<p>4년(전액:2-b)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u>지원순위 하향</u></p> <p>* (예시1) '22년 사업을 '23년 일부 이월, '23년 종료 → '24~'26년 지원순위 하향</p> <p>* (예시2) '22년 사업이 '23년 전액 이월, '24년 종료 → '24~'27년 지원순위 하향</p> <p>3. 기능보강사업 사업 종료 후 천재지변, 화재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품목별 내용연수 도래 전 <u>중요재산을 매각하여 보조금 반납 또는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일부부터 당해연도 남은 기간 및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지원순위 하향</u>(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p> <p>* (예시) '24년 매각하여 '24년 4월 행정처분 → '24. 4월~'27년 지원순위 하향</p> <p>4.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지원 지원순위 하향(단, 사업선정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p> <p>a <u>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 승인절차 등을 미준수한 경우</u></p>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p>○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p><u>b.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사업 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u></p> <p><u>c. 기존에 심의·승인된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추진한 경우</u></p> <p><u>d. 사업수행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시설 등 당사자 외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u></p> <p>5.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u>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일부터 당해연도 남은 기간 및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지원순위 하향</u>(단, 사업선정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b.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c.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p>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반환금을 분납하는 경우 분납 시작 시를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사업 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승인절차 등을 미준수 할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 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 기존에 심의·승인된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추진한 경우 - 사업수행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시설 등 당사자 외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p>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반환금을 분납하는 경우 분납 시작 시를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d.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e.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사업 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4로 이동) -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승인절차 등을 미준수 할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 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4로 이동) - 기존에 심의·승인된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추진한 경우 (4로 이동) - 사업수행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시설 등 당사자 외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4로 이동)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21~'23년) 장애인대상 범죄 발생·학대,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학대판정,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시설 또는 이를 은폐한 시설,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그 밖에 기능보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보조금의 집행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만, 처분취소소송 중인 경우 지원 배제의 기산점은 처음 행정처분을 받은 때로 봄 <p>※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 제외 시설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지자체 안전대진단(보수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21~'23년) 장애인대상 범죄 발생·학대,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학대판정,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시설 또는 이를 은폐한 시설,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수정하여 6으로 이동) f. 그 밖에 기능보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보조금의 집행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만, 처분취소소송 중인 경우 지원 배제의 기산점은 처음 행정처분을 받은 때로 봄 <p>6.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학대,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학대판정,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행정처분일부터 당해연도 남은 기간 및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간 기능보강 국비지원 지원순위 하향(단, 사업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 사업으로 선정)</p> <p>※ 기능보강사업 <u>지원순위 하향 대상</u> 시설에 해당되더라도</p>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p>또는 국토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미흡 또는 불량) 안전 점검 결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보고서를 첨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지원 할 수 있음</p>	<p>“국가·지자체 안전대진단(보수보강) 또는 국토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미흡 또는 불량) 안전 점검 결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보고서를 첨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u>안전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신축 또는 내진보강 등에 한해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 관리주체 직접 발주 실시 여부, 진단의 목적, 구조 기준 등을 검토한 시도 검토 확인서(별지 6-1호)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2) 지원순위 하향 대상 사업자 관리(신설)</p> <p>○ <u>지원순위 하향 대상 사업자 관리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각 시도에서 총괄 관리하고 해당 연도 사업 신청 시 지원순위 하향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u></p> <p>○ <u>이월사업의 경우 전년도 예산계상 신청 및 당해연도 상반기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최초 사업 신청 당시 사업 기간을 지나 이월하는 사업은 지원순위 하향 대상으로 간주하고, 당해연도 하반기 추가 선정 건에 대하여는 사업 공고 조건(이월 관련 지원순위 하향 미적용) 및 천재지변(우기 및 동절</u></p>	<p>정밀안전진단 관련 기준 구체화</p> <p>기능보강 지원 대상 제외 관련 관리 강화</p> <p>이월 사업 지원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함</p>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 지원대상 평가 시 가·감점 고려 항목	<p><u>기 기상 여건 등)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고려하여 지원순위 하향 관련 내용을 반영</u></p> <p>3) <u>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기선정 사업의 지원순위 하향 적용</u></p> <p>○ <u>지원순위 하향 대상 유형 1~4번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이 발생하였음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조사업자의 차기 년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순위 하향 적용을 요청하며, 지원순위 하향 적용 기준 연도는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함</u></p> <p>* (예시) 24년 예산계상 신청으로 25년 사업선정 후 지원순위 하향 대상 유형 1~5번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일이 '24. 12. 31일'까지만 경우만 25년 선정 사업 지원순위 하향</p> <p>○ <u>지원순위 하향 대상 유형 6번의 경우 전년도 예산계상 신청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12. 31. 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만 지원순위 하향</u></p> <p>* (예시) 24년 예산계상 신청으로 25년 사업선정 후 지원순위 하향 대상 유형 6번과 관련하여 보고 및 행정처분일이 '24. 12. 31일'까지만 경우만 25년 선정 사업 지원순위 하향</p> <p>4) <u>지원대상 평가 시 가·감점 고려 항목</u></p>	이월사업의 지원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함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09쪽)	<p>8. 사업 추진 절차</p> <p>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p> <p>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p> <p>(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p> <p>○ 시설 신축 등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p> <p>* 임차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사항은 불가</p>	<p>8. 사업 추진 절차</p> <p>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p> <p>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p> <p>(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p> <p>○ 시설 신축 등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p> <p>* 임차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사항은 불가</p> <p>- <u>신축, 증개축, 옥외시설물 개보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u></p> <p>- <u>건축물 단순 개보수 및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장비보강, 건축물 소유권</u></p>	기능 보강 유형에 따라 소유 구분을 세분화하여 기능 보강 신청 기회 확대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13쪽)	<p>보조금의 정산</p> <p>1. (생략) 특히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p>	<p>보조금의 정산</p> <p>1. (기존과 같음) 특히 해당 보조금이 <u>1억원</u>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p>	법령 개정 사항 반영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14쪽)	<p>[별첨]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 (근거 :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표 생략)</p> <p>*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p>	<p>[별첨]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 (근거 :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표 기존과 같음)</p> <p>*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p> <p>* <u>내용연수 기한 내 차량사고 및 화재 등으로 중요재산 소실 시 당해연도 중요재산 가액기준 금액으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u></p>	관련 내용 수정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16쪽)	<p>마. 사업수행 실적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보조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7조) 	<p>마. 사업수행 실적보고(216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이 <u>1억원 이상인 보조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u>를 제출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7조) 	법령 개정 사항 반영
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17쪽)	<p>9. 중요재산 관리</p> <p>가. 중요재산</p> <p>1) 부동산과 그 종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 ○ 국고보조금으로 증축하여 기존건물의 규모가 확대되고 효용이 증가한 경우 ○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그 효용이 증가한 경우 (건물의 내·외부 도색, 방수공사, 창호교체 등 단순 개보수 공사와 100㎡ 이하의 소규모 개보수 공사는 등록 제외) <p>나.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p> <p>다. 중요재산 부기등기</p>	<p>9. 중요재산 관리</p> <p>가. 중요재산</p> <p>1) 부동산과 그 종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 ○ 국고보조금으로 증축하여 기존건물의 규모가 확대되고 효용이 증가한 경우 ○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그 효용이 증가한 경우 (<u>단순 개보수 공사(도배, 장판, 마루)는 등록 제외</u>) <p><u>나. 보고 및 공시(신설)</u></p> <p>1) <u>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u></p> <p>2) <u>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u></p> <p><u>다.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u></p> <p><u>라. 중요재산 부기등기</u></p>	<p>단순 개보수 공사 명확히 분류</p> <p>법적 의무 사항 명시화</p>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p>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22쪽)</p>	<p>[별지 제3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서</p> <p>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명칭 :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대표 :</p> <p>2. 시설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시설 명 : (☎ - -) <input type="checkbox"/> 시설 장 : (☎ - -)</p> <p>3. 사업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업종류 :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장비구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업 명 : <input type="checkbox"/> 사업 량 :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소 :</p> <p>4. 사업에 관한 의견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필요성 :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소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사업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사업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사업전망 : <input type="checkbox"/> 건축부지의 건축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input type="checkbox"/>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p>	<p>[별지 제3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서</p> <p>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명칭 :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대표 :</p> <p>2. 시설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시설 명 : (☎ - -) <input type="checkbox"/> 시설 장 : (☎ - -)</p> <p>3. 사업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사업종류 :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개축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장비구입 <input type="checkbox"/> 사업 명 : <input type="checkbox"/> 사업 량 :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소 :</p> <p>4. 사업에 관한 의견(검토 누락 시 사업선정 제외)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필요성 :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소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사업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사업비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전망 : <input type="checkbox"/>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 <input type="checkbox"/> 사업기간 내 완료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건축부지의 건축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대상이님 <input type="checkbox"/> 종합검토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p>	<p>별지 제3호 서식 보완</p>
<p>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25쪽)</p>	<p>[별지 제6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p>	<p>[별지 제6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p>	<p>사업 종류 및 공사비 산정 방법을 검</p>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p>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건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건 : 20</p> <p>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p>	<p>사 업 종 류 :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개축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장비보강(부지 및 설비 도면 필요 시)</p> <p>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건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도 없음</p> <p>공사비 산정 방법 : <input type="checkbox"/> 내역 산출 <input type="checkbox"/> 비교 견적 공사비 적정 여부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건축 허가 신고 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허가신고 상 아님</p> <p>기 타 검 토 의 건 : 20</p> <p>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p>	<p>토 항목에 추가하고 검토 결과를 명확히 함</p>
<p>신설</p>	<p>별지 제6-1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동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확인서 (신설)</p>	<p>[별지 제6-1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동(서식추가)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확인서</p> <p>* 본문 참고</p>	<p>정밀 안전 점검 보고서 검토 확인서 신설</p>
<p>2-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27쪽)</p>	<p>[별지 제8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동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p> <p>보조금관리예관한법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p>	<p>[별지 제8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동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p> <p>보조금관리예관한법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p>	<p>변경 신청 처 서식 보 완</p>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p>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법인 <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명칭 : _____</p> <p><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대표 : _____</p> <p>2. 시설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시설종류 : _____</p> <p><input type="checkbox"/> 시설명 : _____ (제 - -)</p> <p><input type="checkbox"/> 소재지 : _____</p> <p><input type="checkbox"/> 시설장 : _____ (제 - -)</p> <p>3. 당초·변경 대비표</p> <table border="1" data-bbox="338 701 716 868"> <thead> <tr> <th>변경대상</th> <th>당 초</th> <th>변 경</th> <th>증(△)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p>4. 변경사유</p> <p>별첨 : (사 도자사 또는 사군구 공무원 <u>한정</u>한 결과 보고서 사본 1부</p>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p>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법인 <input type="checkbox"/></p> <p><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명칭 : _____</p> <p><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대표 : _____</p> <p>2. 시설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시설종류 : _____</p> <p><input type="checkbox"/> 시설명 : _____ (제 - -)</p> <p><input type="checkbox"/> 소재지 : _____</p> <p><input type="checkbox"/> 시설장 : _____ (제 - -)</p> <p>3. 당초·변경 대비표</p> <table border="1" data-bbox="740 701 1118 868"> <thead> <tr> <th>변경대상</th> <th>당 초</th> <th>변 경</th> <th>증(△)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p>4. 사업변경 사유 적정성 :</p> <p><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p> <p>- 검토의견 :</p> <p>5. 사업변경에 관한 의견</p> <p><input type="checkbox"/> 사업변경의 필요성 :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p> <p><input type="checkbox"/> 사업변경에 따른 장소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p> <p><input type="checkbox"/> 사업 변경량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p> <p><input type="checkbox"/> 사업비의 변경의 적정성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p> <p><input type="checkbox"/> 변경 사업장소 : <input type="checkbox"/> 사업기간내 완료 가능 <input type="checkbox"/> 사업기간내 완료 불가능</p> <p><input type="checkbox"/> 사업변경에 따른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 등 검토사항 :</p> <p><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대상아님</p> <p><input type="checkbox"/> 사업 변경에 관한 종합검토 의견 등 :</p> <p>붙임 1. 사 도자사 또는 사군구 공무원 <u>한정</u>한 결과보고서출장보고서 사본 1부</p> <p>2.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변경 수행계획서 1부</p> <p>3.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변경 검토 의견서 1부.</p>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신설	(신설)	<p>(붙임 2) 기관 및 법인 공통(서식추가)</p> <p>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변경 수행계획서 (신축, 증개축, 개보수)</p> <p>* 본문 참고</p>	변경 신청서 서식의 붙임 신설																																																		

I.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명	2023년	2024년 개정	개정사유
신설	(신설)	(붙임 2-1) 기관 및 법인 공통(서식추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변경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 본문 참고	변경 신청 서 서식의 붙임 신설
신설	(신설)	(붙임 3) 기관 및 법인 공통(서식추가)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변경 검토 의견서 * 본문 참고	변경 신청 서 서식의 붙임 신설
신설	(신설)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순위 하향 대상 사업관리 대장 * 본문 참고	지원순위 하향 대상 사업관리 대장 신설
2-7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 (238쪽)	VI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2. 실비입소 비용 ○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 747,300원	VII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2. 실비입소 비용 ○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 <u>784,700원</u>	물가 상 승분 등 반영